

Section 504/ADA 조항에 따라 학부모나 학생에게 제공되는
솔트레이크시 교육구의 절차적 보호 조항
(SALT LAKE CITY SCHOOL DISTRICT PROCEDURAL SAFEGUARDS AVAILABLE
TO PARENTS AND STUDENTS UNDER SECTION 504/ADA)

다음은 Section 504, 미국 장애인법, 2009 년 미국 장애인법 수정조항 및 가정교육 및
프라이버시권법 하에 제공되는 기본적인 절차적 보호 조항들입니다.
귀하는 아래의 권리를 갖습니다.

1. 자녀가 장애로 인해 차별 받지 않고 공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그 혜택을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2. 연방법에 포함된 귀하의 권리에 관해 학교로부터 조언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자녀의 신분 확인, 평가, 프로그램 또는 학교 배정에 관한 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자녀에 관한 평가, 교육에 관련된 결정 및 학교 배정에 관한 결정이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하여, 자녀와 자녀의 장애, 평가 자료 및 배정 선택안 등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의해서 결정되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자녀에 대한 초기 평가와 자녀를 위한 서비스 및 편의 시설 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6. 자녀가 적절한 공교육을 무료로 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선에서 최대한으로 다른 학생들과 함께 교육받게 할 권리가 포함되며 또한, 자녀가 교내 활동 및 학교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갖는 데 있어서 학교가 합리적인 시설/시스템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권리가 포함됩니다.
7. 자녀가 장애가 없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필적하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할 권리가 있습니다
8. 자녀가 장애인교육법(IDEA)의 적용을 받는 경우, 1973 년의 재활법 Section 504 에 따른 합리적인 시설/시스템, 또는 특별 교육 및 관련 서비스를 자녀가 받을 수 있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9. 학교에서 제공되는 교육에 관련되지 않은 활동 및 특별교육 활동에 참여할 동등한 기회를 제공받게 할 권리가 있습니다.
10. 자녀의 신분 확인, 평가, 교육 프로그램 및 배정에 관한 결정을 수록한 관련 기록 모두를 검토할 권리가 있습니다.

자녀가 장애로 인해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낄 경우에는 다음의 분쟁 해결 절차가 있습니다.

정식 제소 : 정식 제소는 학생, 학부모 또는 후견인에 의해 언제라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식 제소 절차는 모든 교육청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건물 내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제소장은 교육청 직원에게 요청하거나 교육청의 웹사이트인 www.slcschools.org (방침—일반 방침—G-19: 차별, 괴롭힘, 보복 금지—공평 및 준수에 관한 제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 해결 절차 : 정식 제소 절차가 만족스런 해결을 이끌어 내지 못한 경우에, 학생, 학부모 및 후견인은 적절한 시기에 교육청 방침 G-18에 관련된 문제 및 조정 요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제소 해결 절차를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제소 해결 절차는 교육청의 웹사이트인 www.slcschools.org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생, 학부모 및 후견인에게 절차가 이미 시작된 후라 할지라도,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권장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경우에는 정식의 문제 및 해결 요청서는 언제라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문 요청 : 정당한 절차는 Section 504에 따라, 학교에서 내린 결정이나 학교에서 이용된 절차로 인하여 학부모와 학교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회로서 정의됩니다. 학부모나 후견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정한 청문을 통해 중재자가 참여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문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교육감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a. 정당한 절차에 의한 청문을 요청하는 사람의 이름, 주소 및 낮에 연락을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
- b. 학생의 이름 및 현재 출석 중인 학교
- c. 진술의 근거가 되는 사실 등 문제에 대한 진술서
- d. Section 504가 어떻게 위반되고 있는지에 대한 고소인의 설명
- e. 문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귀하는 인권사무실(**Office for Civil Rights**)에 정식으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인권사무실의 지역 사무실 연락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U.S. Department of Education
Office for Civil Rights, Region VII
Federal Building, Suite 310
1244 Speer Boulevard
Denver, Colorado 80204-3582
303-844-5695

<http://www.schools.utah.gov/equity/Civil-Rights-Information.aspx>

교육구 직원이나 학생은 연령, 피부색, 장애 여부, 성별, 성 정체성, 유전 정보, 출신국, 임신 상태, 인종, 종교, 성적 경향, 또는 퇴직 군인 여부 등을 근거로 하여 고용, 또는 교육구 프로그램이나 활동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육구는 자신의 방침, 민원 절차, 프로그램 이용 가능성, 교육구 시설 이용, 편의제공, 기타 평등고용기회 문제 등을 포함하여 자신의 프로그램, 서비스, 채용에 있어서 동등한 이용 자격과 기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구는 또한, 스카우트 활동 단체를 포함하여 미국법 Title 36 에 기재된 모든 청소년 단체들을 위한 교육구 시설을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명시된 책임자는 불법적인 차별, 괴롭힘 및 보복에 관한 질문 및 불만 사항을 처리하도록 임명되었습니다.

Tina Hatch, Compliance and Investigations
440 East 100 South
(801) 578-8388
Salt Lake City, Utah 84111
tina.hatch@slcschools.org

